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「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중 조문내용이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,
- 나. 1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1년을 계속하여 지급하고, 2학기 선발자는 당해 학기만 지급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장학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학기 추천, 심의, 지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7조(장학금의 지급)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 삭제
 - ①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후 15일 이내에 군수는 읍, 면장을 통해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
- 나. 용어,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발취 : “해당없음”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- 다. 관계부서승인 : “해당없음”
- 라. 입법예고 : 2012.04.13~05.03 (20일간) - “제출의견 없음”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중·고·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”을 “중·고등·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직중인 자”를 “재직 중인 사람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자 중에서 중·고생”을 “사람 중에서 중·고등학생”으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, “이상인 자”를 “이상인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대학”을 “대학교”로, “학기”를 “학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단정한 자”를 “단정한 사람”으로, “이상”을 “이상인”으로, “입상한 자.”를 “입상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”을 “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”으로, “자를 매학기마다”를 “사람을 매 학기”로 하고,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”을 “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”을 “읍·면장이 추천한 사람을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장학생은 이장 자녀중”을 “장학생은”으로, “지급하되,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지급대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. 이 경우 중·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지급하고,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,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읍·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가 다음 각호의 1”을 “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있을때”를 “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촉되었을때”를 “해촉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받았을 때”를 “받은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목적에 사용한 때”를 “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때”를 “장학금의 수혜자로 선발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운영하기위하여”를 “운영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<u>중·고·대학</u>생에게 지급하는 <u>이장자녀장학금</u> (이하 “<u>장학금</u>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현재 이장으로 <u>재직중인</u> 자의 자녀로서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<u>중·고</u>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“미” 이상이 전체과목의 <u>50%</u> 이상 이거나,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고,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.5점 만점에 2.5점 <u>이상인</u> 자. 다만,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, <u>대학</u> 신입생은 <u>고등학교</u> 최종 <u>학기</u> 학과성적으로 한다.</p> <p>2. 품행이 <u>단정한</u> 자 중 최근 1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중·고등·대학</u>생에게 지급하는 <u>이장자녀 장학금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 ----- <u>재직 중인 사람</u>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사람</u> 중에서 <u>중·고등학생</u>----- ----- ----- <u>5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 <u>이상인 사람</u>. ----- ----- ----- <u>대학</u> <u>교</u> ----- <u>학</u> <u>기의</u> -----.</p> <p>2. ----- <u>단정한 사람</u> -----</p>

이내에 기능, 체육, 예능부문에
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하
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.

제3조(추천) 읍·면장은 제2조의 규
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
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
추천한다. 다만, 예산의 절감과
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방
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
수혜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선발 및 심의) ① 평창군이장
자녀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
위원회에서 한다.

② 군수는 읍·면장으로부터 추천
된 자를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
확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이
장 자녀중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
당하면 모두 지급하되, 예산의 범
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.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
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별 중·고
생은 공납금의 전액, 대학생은 2
년제 70만원, 4년제 100만원으로

----- 이상인 ----
-----입상한 사람

제3조(추천) ----- 제2조에 해
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
하는 것-----
사람을 매 학기 ----- 평창
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-----
----- . -----

----- .

제4조(선발 및 심의) ① 평창군 이
장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
이라 한다) -----
----- .

② ----- 읍·면장이 추천한 사
람을 -----
----- .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---

지급대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-
----- .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금은 학기별
로 지급한다. 이 경우 중·고등학
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지급하
고,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,

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
감액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
매학기 명단 확정후 15일 이내에
군수는 읍, 면장을 통해 지급한
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
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
다.

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
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
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
까지 계속 지급한다.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로
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
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
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
해촉되었을 때
2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
학처분을 받았을 때
3. (생 략)
4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
사용한 때
5.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
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때

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
급한다. ----- 범위-----
-----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군수는 장
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
일 이내에 읍·면장을 통하여 지
급한다.

<삭 제>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-----
-----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----- 있을
때-----.

1. -----
해촉된 경우
2. -----
----- 받은 경우
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목적
으로 사용한 경우
5. -----
--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발된
경우

② 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
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
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
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
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
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
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
----- 경우 -----
----- .

제9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

----- 운영하기 위하여 ----

----- 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“해당없음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추가비용 없음. (예산증액 불필요)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
연락처	(033) 330 - 2291